

의안번호	2126325
의 퇴 인	태영호의원
회 답 일	2024. 2.6.
추 계 번호	24D007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4,200만원, 2029년 1억 5,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7억 2,600만원(연평균 1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재단에 상근이사 1명 추가 (안 제12조)	142	139	144	148	153	726	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상근이사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둔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2024년 현재까지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음
 - 예산 현황을 보면, 재단 출범 예정 연도인 2016년 예비비 47억원, 2017년 11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8억원,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년 4억 7,500만원(사무실 설치 3억 7,500만원, 2개월분 임대·관리비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액은 전액이 불용
- 현행법에서 재단의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요구안의 상근이사는 1명(2024년 기준 보수 1억 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근이사 1명이 더 추가되는데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3년 10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명목임금상승률	3.0	3.4	3.2	3.2	3.2	3.2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재단에 상근이사 1명 추가(안 제12조)

- 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요구안에 반영된 상근이사의 보수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상근이사 1명을 더 추가할 경우의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추가재정소요를 추정
 - (인건비) 재단의 상근이사의 보수 1억 800만원(중기재정계획요구안, 2024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후, 퇴직적립금 및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공공기관 법정부담금²⁾을 합하여 인건비를 산출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5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신규 인원 1명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1인당 자산취득비³⁾를 곱하여 687만원(1명×687만원)으로 산출

[표 2] 상근이사 1명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인 건 비	1인 보수(a)	112	115	119	123	127	596
	기관부담금(b=a×기관부담률)	13	13	14	14	15	68
	퇴직적립금(c=a÷12)	10	11	11	11	12	55
	소계(d=a+b+c)	135	139	144	148	153	719
자산취득비(e)		7					7
합 계(d+e)		142	139	144	148	153	726

2)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정하는 공공기관 법정부담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기관부담률은 2025년 11.294%, 2026년 11.390%, 2027년 11.485%, 2028년 11.579%, 2029년 11.674%임

3)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인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 6)』에서 산정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